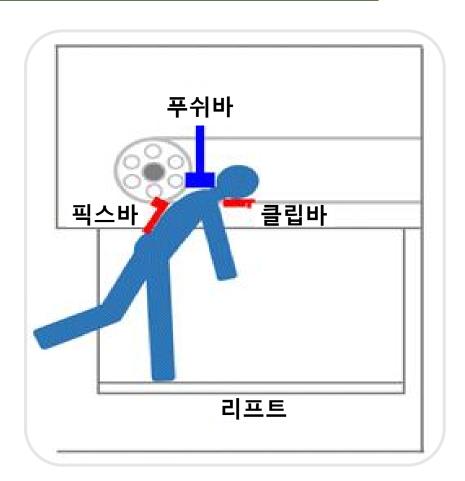


평판타발기에 협착



깨 재해개요

- 2024. 06. 00.(화) 08:59분경 경남 김해시 소재
 000 작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평판타발기* 배지부**
 내부에 진입하여 정비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
 작동시켜 재해자의 목 부위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함
- * 대량의 종이를 한번에 절단하는 기계
- ** 가공이 완료된 골판지가 배출되는 부분



🎒 발생원인

- 1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실시
 - 작업자가 정지 중인 기계 내부에 진입하여 정비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, 예기치 못한 기계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(LOTO: Lock-Out Tag-Out)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, 미실시

🄼 예방대책

- 1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및 감독
 - 작업자가 정지 중인 기계 내부에 진입하여 정비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,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등 예기치 않은 기계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 및 표지판(LOTO)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관리·감독 철저
- ② 회전축·체인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추가 설치
 - 작업자가 기계의 회전축·기어·체인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·방책 또는 광전자 보호장치 등의 감응형 방호장치를 배지부 내부에 추가설치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